공 개

의안번호	제 249 호
의 결 연 월 일	2026. 9. 2. (제15차)

의결사항

2024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혐의 등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9. 2.

1. 의결주문

㈜한솔케미칼 등 76사의 2024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1부터 별지76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솔케미칼 등 76사의 2024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한솔케미칼 등 76사에 대한 조치안

① ㈜샘씨엔에스 **1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 부과

②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조치 부과

③ ㈜오건에코텍 등 **7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1년"** 조치 부과

④ 덕산하이메탈㈜ 등 **29사**에 대해 **"경고"** 조치 부과

⑤ 한솔케미칼㈜ 등 **38사**에 대해 **"주의"** 조치 부과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의무**를 **위반**한 상장법인 **29사**에 대해서는 **"각서 제출요구**(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 **조치**도 **부과**

4. 참고사항

가. 제13차 감리위원회 심의필('26.7.30)

나. 관계법규 (붙임)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별지1)

㈜한솔케미칼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솔케미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한솔케미칼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O OOOOO OO /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한솔케미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한솔케미칼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3	2025-02-05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17	2025-02-11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

덕산하이메탈㈜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덕산하이메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덕산하이메탈㈜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 O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덕산하이메탈㈜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덕산하이메탈㈜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덕산하이메탈㈜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0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2-27	2025-02-14	제출	제출	제출	제출	미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

㈜동방메디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동방메디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동방메디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 OOO OOO O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동방메디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동방메디컬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동방메디컬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2025-02-27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

무림에스피㈜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림에스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무림에스피㈜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무림에스피㈜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무림에스피㈜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9	2025-02-11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3	2025-02-21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

㈜샘씨엔에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샘씨엔에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샘씨엔에스

-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OOOOO OO, OO(OOO, O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 ㈜샘씨엔에스는 2027회계연도('27.01.01.~'27.12.31.)부터 2029회계연도('29.01.01.~'29.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 ㈜샘씨엔에스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샘씨엔에스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2	2025-02-03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

시큐레터㈜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큐레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시큐레터㈜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OOOO OO, 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시큐레터㈜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시큐레터㈜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시큐레터㈜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7)

㈜쏠리드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쏠리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쏠리드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O OOO 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쏠리드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쏠리드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쏠리드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1	2025-02-0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2-25	2025-02-26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8)

씨에스베어링㈜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씨에스베어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씨에스베어링㈜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 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씨에스베어링㈜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씨에스베어링㈜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씨에스베어링㈜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0	2025-01-22	제출	제출	제출	제출	미제출
	연결	2025-02-24	2025-02-10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9)

㈜아셈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셈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아셈스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O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아셈스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아셈스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아셈스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1	2025-02-12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5	2025-02-26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0)

㈜아이센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이센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아이센스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OO OO 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아이센스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아이센스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아이센스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1	2025-02-10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2-25	2025-02-26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1)

㈜아이에이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아이에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아이에이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 O OO(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아이에이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아이에이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아이에이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7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7	2025-02-17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2)

㈜에스바이오메딕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에스바이오메딕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에스바이오메딕스

- ○ 대표이사 :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 ㈜에스바이오메딕스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에스바이오메딕스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1-22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2-27	2025-02-28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3)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

- ○ 대표이사 :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에스엠라이프디자인그룹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9	2025-01-16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2-23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4)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O O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29호㈜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1-01	2025-01-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5)

㈜오디텍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오디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오디텍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 OOO OOO OO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오디텍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오디텍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오디텍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6	2025-02-10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0	2025-02-10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6)

㈜와이어블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와이어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와이어블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O OO O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와이어블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와이어블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2-20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3-02	2025-02-17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7)

㈜원풍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원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원풍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원풍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원풍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원풍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7	2025-02-14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8)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O OOOOO OO (O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유안타제17호기업인수목적㈜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2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19)

제닉스로보틱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닉스로보틱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제닉스로보틱스㈜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 OOO OOO OOO 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제닉스로보틱스㈜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제닉스로보틱스㈜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제닉스로보틱스㈜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5	2025-02-14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0)

㈜제테마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테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제테마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제테마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제테마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제테마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2-21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3-02	2025-02-21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1)

㈜케이사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케이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케이사인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OOOO 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케이사인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케이사인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케이사인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0	2025-02-03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2025-02-24	2025-02-0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2)

㈜코리아나화장품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코리아나화장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코리아나화장품

-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O OOO OOO OOO OOOO 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 ㈜코리아나화장품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 ㈜코리아나화장품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코리아나화장품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1	2025-02-12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5	2025-02-12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3)

㈜팬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팬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팬엔터테인먼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팬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팬엔터테인먼트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팬엔터테인먼트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1	2025-02-12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연결	2025-02-25	2025-02-1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4)

㈜하림지주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림지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하림지주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 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하림지주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하림지주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하림지주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2	2025-02-0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2-26	2025-02-27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5)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O 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한화플러스제4호기업인수목적㈜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2-14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6)

㈜에이치씨홈센타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에이치씨홈센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에이치씨홈센타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 OOO 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에이치씨홈센타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에이치씨홈센타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에이치씨홈센타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1	2025-02-12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5	2025-02-24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7)

흥구석유㈜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흥구석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흥구석유㈜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 OOOOOO 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흥구석유㈜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흥구석유㈜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홍구석유㈜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6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8)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0	2025-01-24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2-24	2025-01-24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29)

KD㈜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KD㈜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O OOO, OOO-OO(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KD㈜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KD㈜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2-27	2025-02-28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0)

㈜오건에코텍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오건에코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오건에코텍

-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O OOO OOOOOOO 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 ㈜오건에코텍은 2027회계연도('27.01.01.~'27.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 ㈜오건에코텍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오건에코텍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2-12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3-02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1)

㈜이엠티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엠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이엠티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 OOO OOOO OOO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이엠티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 ㈜이엠티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이엠티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2-28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2)

주식회사 인터로이드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식회사 인터로이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식회사 인터로이드

-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 OOO OOO (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 주식회사 인터로이드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 ○ 주식회사 인터로이드는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식회사 인터로이드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2-2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3)

㈜테크엔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테크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테크엔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 OOOOO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테크엔은 2027회계연도('27.01.01.~'27.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테크엔은 각서(외감법규의 성실한 준수를 확약하는 내용)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테크엔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2025-03-02	2025-03-28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4)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OO OOO OOO OOO 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강릉에코파워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2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5)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 (OOO, OOOO) OOOOO (OOO, 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공평십오십육피에프브이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9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6)

㈜네오바이오텍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네오바이오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네오바이오텍

-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 ㈜네오바이오텍은 2027회계연도('27.01.01.~'27.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네오바이오텍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1-31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3-31	2025-04-08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ㄱ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7)

네이버제트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네이버제트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네이버제트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 O (OOO, O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네이버제트 주식회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네이버제트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2-27	2025-02-28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8)

넥스플랜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넥스플랜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넥스플랜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 OOO OO (OOO, 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넥스플랜 주식회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넥스플랜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2-14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3-3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39)

주식회사 대전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식회사 대전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식회사 대전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OOO O-OO (OOO), OOOO (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주식회사 대전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식회사 대전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0)

디엘에너지글로벌㈜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디엘에너지글로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디엘에너지글로벌㈜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OOOOOO 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디엘에너지글로벌㈜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디엘에너지글로벌㈜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1)

르노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르노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르노코리아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O 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르노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르노코리아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0	2025-02-13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2)

마륵파크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륵파크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마륵파크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OO OO OOOO 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 마륵파크 주식회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마륵파크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7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 OOOO OOO (OOO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3	2025-02-0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4)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O 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무궁화캐피탈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3-17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5)

㈜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

-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 OOOO(OOOOO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 ㈜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2	2025-03-13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3-31	2025-04-21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6)

블루월넛㈜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블루월넛㈜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블루월넛㈜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O OOOOOOO O (OOOO, 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블루월넛㈜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블루월넛㈜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7	2025-02-14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7)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

- ○ 대표이사 :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OO 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 (주)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4	2025-02-19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18	2025-02-19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8)

㈜신영대농개발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신영대농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신영대농개발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 OOO OOO OOO OOOOO 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신영대농개발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신영대농개발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2	2025-02-10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연결	2025-03-3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49)

엠더블유에스더블유㈜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엠더블유에스더블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엠더블유에스더블유㈜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 OO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엠더블유에스더블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엠더블유에스더블유㈜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2-28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0)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 OOO OOO OOO 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5	2025-01-15	제출	제출	제출	제출	미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1)

영풍전자㈜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영풍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영풍전자㈜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OOOOOO OO (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영풍전자㈜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영풍전자㈜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2)

유니투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유니투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유니투스㈜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 OOO OOO OO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유니투스㈜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유니투스㈜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4	2025-02-05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3)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 OOOO OO-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유베이스매뉴팩처링아시아㈜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제출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4)

㈜이씨스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씨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이씨스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 OO (OOO, O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이씨스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이씨스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5)

이지스엑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지스엑스자산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이지스엑스자산운용㈜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 OOOO OOO (OOOOO, OO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이지스엑스자산운용㈜은 2027회계연도('27.01.01.~'27.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이지스엑스자산운용㈜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6)

㈜씨더블유씨앤디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씨더블유씨앤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씨더블유씨앤디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OO 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씨더블유씨앤디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씨더블유씨앤디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6	2025-02-10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7)

㈜제이시스메디칼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이시스메디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제이시스메디칼

- ○ 대표이사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 OOOOOO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 ㈜제이시스메디칼은 2027회계연도('27.01.01.~'27.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제이시스메디칼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3-02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2025-03-16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8)

제이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제이영동고속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제이영동고속도로㈜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O 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제이영동고속도로㈜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제이영동고속도로㈜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06	2025-02-07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59)

중앙파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앙파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중앙파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 OOOO 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중앙파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중앙파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7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0)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1)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2)

처브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처브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처브라이프생명보험㈜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 O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처브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1	2025-02-12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3)

㈜투게더대전문화피에프브이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투게더대전문화피에프브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투게더대전문화피에프브이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OOO OO 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투게더대전문화피에프브이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투게더대전문화피에프브이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4)

㈜파이오니아상인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파이오니아상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파이오니아상인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파이오니아상인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파이오니아상인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2025-02-19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5)

㈜풍무역세권개발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풍무역세권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풍무역세권개발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O OOO (OOO. OOOO) 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풍무역세권개발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풍무역세권개발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2	2025-02-14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6)

㈜케이티스튜디오지니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케이티스튜디오지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케이티스튜디오지니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OOO OO (OOO, OOOOOOOOOOO,O-O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케이티스튜디오지니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케이티스튜디오지니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7	2025-02-28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7)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 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기 사업연도('26.11.01.~'27.04.30.)부터 제15기 사업연도('27.05.01.~'27.10.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코레이트타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아래와 같이 제8기 사업연도(2024-01-01~2024-06-30)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06-30	별도/개별	2024-08-08	2024-11-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8)

코스모캐피탈㈜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코스모캐피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코스모캐피탈㈜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O OOO (OOO, O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코스모캐피탈㈜은 2027회계연도('27.01.01.~'27.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코스모캐피탈㈜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1-30	2025-02-06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지연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69)

주식회사 팔도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주식회사 팔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주식회사 팔도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OO, O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주식회사 팔도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주식회사 팔도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2	2025-02-13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3-31	2025-03-27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70)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 (OOO, 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해 "경고"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0	2025-02-13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4	2025-02-26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71)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한강시네폴리스개발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 OOO OOO OOO, OOOO(O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3-25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72)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 대표이사 : ◇◇◇,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 OOO (OOO, OOO) 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는 2027회계연도('27.01.01.~'27.12.31.) 재무제표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1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N/A	N/A	N/A	N/A	N/A	N/A	N/A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73)

한국지엠㈜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지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한국지엠㈜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등에 의하여

○ 한국지엠㈜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한국지엠㈜은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3-31	2025-02-14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74)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O OO (OOO, OO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한국파렛트풀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3	2025-02-14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3-31	2025-03-24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75)

한온시스템이에프피 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한온시스템이에프피 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한온시스템이에프피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O OOO OOOO OO (OOO, OO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한온시스템이에프피 주식회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한온시스템이에프피 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6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연결	2025-03-02	2025-02-1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별지76)

현대스틸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조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현대스틸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

□ 현대스틸산업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법인등록번호 : OOOOOO-OOOOOOO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
○ 본점소재지 : OOOO OOO OOO OOO OOOO OO-O

2. 조치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등에 의하여

○ 현대스틸산업주식회사에 대해 "주의" 조치한다.

3. 조치이유

가. 지적사항

□ 현대스틸산업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2024회계연도(2024-01-01~2024-12-31) 감사前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 하는 등 감사前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음

2024회계연도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재무 제표	법정 제출기한	실제 제출일자	기재내용*				
				재무 상태표	손익 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
2024-12-31	별도/개별	2025-02-12	2025-02-13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지연 제출
	연결	2025-02-26	2025-02-13	제출	제출	제출	제출	제출

* N/A: 제출대상 아님
미제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부실 기재: 기재사항의 일부분을 누락하거나,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지연 제출: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후에 제출한 경우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 재무제표를 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한 경우

나. 근거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9조제1항,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 회사는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이내에 감사인과 증선위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선위는 회사가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출기한 :
1) 별도재무제표 : 정기총회 6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 정기총회 4주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붙임)

관계 법규

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⑥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을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6. (생략)

7. 주권상장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

8.~11. (생략)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5. (생략)

제30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 또는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위반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2. 감사보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제6조에 따른 재무제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3.~8. (생략)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④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제3항 각 호의 회사는 법 제6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후에 즉시 그 재무제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 제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 분개[분개, 부기(簿記)에서 거래 내용을 차변(借邊)과 대변(貸邊)으로 나누어 적는 일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방법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⑤ (생략)

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나.~차. (생략)
4.~6. (생략)

제44조(업무의 위탁) ① (생략)

②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가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심사하는 업무

1의2. 법 제6조제4항 및 이 영 제8조에 따라 재무제표의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점검하는 업무

2.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겨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사유를 접수하고 공시하는 업무

3.~22. (생략)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접수하는 업무를 거래소에 위탁한다.
④~⑥ (생략)
⑦ 금융감독원장 및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한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확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40조(위탁업무의 보고) ①~⑥ (생략)
⑦ 금융감독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년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1월말: 영 제4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2. 5월말: 영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3. 9월말: 영 제44조제2항제8호・제12호・제14호의 업무
⑧ 한국거래소는 위탁업무 수행결과를 매년 5월말까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제도팀	회계감리1국
연 락 처	02-2100-2698	02-3145-7702